

##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-313호

「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」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-36호, 2019.7.25., 일부개정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1일  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### 「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」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법령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를 정비하고, 가축으로 정하는 곤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곤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중 곤충의 범위에 ‘아메리카동애등에’ 및 ‘벼메뚜기’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법령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조항 신설
-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중 곤충의 범위에 ‘아메리카동애등에’ 및 ‘벼메뚜기’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함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jh3536y@korea.kr

2) 주소 : (30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

3) 팩스 : 044-868-0127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(전화 : 044-201-233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, 국민소통 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축산법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(생략)</li> <li>3. <u>곤충(14종) : 갈색거저리, 넓적사슴벌레, 누에, 늦반딧불이, 머리빨가위벌, 방울벌레, 왕귀뚜라미, 왕지네, 여치, 애반딧불이, 장수풍뎅이, 톱사슴벌레, 호박벌, 흰점박이꽃무지</u></li> <li>4. (생략)</li> <li>5. (재검토기한) <u>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li> </ol>	<p>제2조(동물의 종류) 「축산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고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른 "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"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곤충(16종) : 갈색거저리, 넓적사슴벌레, 누에, 늦반딧불이, 머리빨가위벌, 방울벌레, 벼메뚜기, 아메리카동애등애, 왕귀뚜라미, 왕지네, 여치, 애반딧불이, 장수풍뎅이, 톱사슴벌레, 호박벌, 흰점박이꽃무지</u>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&lt;삭제&gt;</li> </ol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재검토기한) <u>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

##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

개정 2023. 00. 00.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-00호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축산법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타 동물의 종류) 「축산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고 한다) 제2조 제4호에 따른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"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.

1. 짐승(1종) : 오소리
2. 관상용 조류(15종) : 십자매, 금화조, 문조, 호금조, 금정조, 소문조, 남양 청홍조, 붉은머리청홍조, 카나리아, 앵무, 비둘기, 금계, 은계, 백한, 공작
3. 곤충(16종) : 갈색거저리, 넓적사슴벌레, 누에, 늦반딧불이, 머리뿔가위벌, 방울벌레, 벼메뚜기, 아메리카동애등애, 왕귀뚜라미, 왕지네, 여치, 애반딧불이, 장수풍뎅이, 톱사슴벌레, 호박벌, 흰점박이꽃무지
4. 기타(1종) : 지렁이

제3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&lt;제2023-00호, 2023.00.00.&gt;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